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2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정혜경 • 민병덕 • 윤종오

김종민·조 국·이기헌

김선민 · 조계원 · 서왕진

박은정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도 금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합니다.

이에,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사립 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을 정비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 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 삭제).
- 나.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 57조의6제1항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다.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홍보 행위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홍보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86조제1항제1호).
- 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22조제1항을 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함 (안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

88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 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選擧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6제1항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

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敎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를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지위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 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를 "제53조제1항제5 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	
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	
함한다)는 <u>選擧에</u> 대한 부당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	거에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	<u><단서 삭제></u>
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	
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	
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	
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	
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u>니하다.</u>	
1.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	<u><삭 제></u>

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 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 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 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 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생략)
-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 4. ~ 6. (생략)
-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 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 教員

8. • 9. (생략)

② ~ ⑤ (생 략)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운동 금지) ①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 | 람(제60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4.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 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 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u>선거운</u>
동(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
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
는 경우를 말한다 <u>)</u>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만, 대통</u>
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

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 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 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5. ~ 9. (생략) ② (생략)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저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公務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 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 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 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 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 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 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 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63	조(공	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을	미치	는형	행위금	지) ① -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 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 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 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 ·새마을運動協議會 · 韓國自由 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 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 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 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所屬職員 또는 選擧區民에게 教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業績을 弘報하는 행위 2. ~ 7. (생략)
- ② ~ ⑦ (생 략)
-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 第 任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 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
1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
고 지위를 이용하여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
任 등의 제한) ①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 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 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 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 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 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 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 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 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 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 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 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 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u>-</u> .
1
제53조
<u>제1항제5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